

마. 제도 개선사항 홍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자체, 자조금 단체, 생산자단체 등과 협조 하여 마을방송, 문자발송, 홍보물 배부, 소식지 게시, 설명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홍보함
- 지자체 직불금 담당부서는 기본 직불금 신청서 접수 시 등록정보의 변경 사항에 대해 변경 신고하도록 안내문 배부 등 홍보 활동을 수행함
- 자조금 단체는 소속 회원에게 안내문자 발송, 소식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안내함

바. 정기 변경신고 기간 운영

- 농관원은 주요 작물 식재시기를 하계작물, 추계작물, 동계작물로 구분하여 정기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농업경영체가 농지 소재지별 재배품목과 면적의 변경사항 등을 신고하도록 안내함
 - 지원·사무소별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기간 동안에는 관내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1회 이상 변경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함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방법) 등록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uni.agrix.go.kr)으로 신청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상담 콜센터 (전국) 1644-8778로 신청

- 읍면동은 기본직불 신청서 접수 시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벼 등의 재배품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농관원에 신고*하도록 안내함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 시 농관원에 이송함)
- 자조금 단체(마늘, 양파 등)는 경작신고서 접수 시 재배품목 등록정보의 변경 사항을 농관원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신청서 공동접수 등 협조함
 - 소속회원에게 1회 이상 변경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함

- 농관원은 정기 변경신고 기간 동안 농업경영체의 방문, 전화 등 변경신고가 접수되면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 처리함

사. 이행점검조사

□ 이행점검 적용기간

- '25년도 이행점검 적용기간: 2024. 10. 1. ~ 2025. 9. 30.(12개월간)

*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확인조사 한 경우 10.10.까지 이행점검 가능

□ 점검대상 선정

- 재배품목 : 시군별 중점관리 대상품목을 일정규모 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의 30% 이상을 점검대상으로 선정·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군별 중점관리 대상품목의 재배현황, 농관원 지원·사무소 조사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검대상·비율을 조정함

* 2025년 중점관리 대상품목 : 동계작물(마늘, 양파, 감귤), 하계작물(벼, 사과, 배, 포도), 추계작물(무·배추) 등

- 정기 변경 신고기간이 종료되면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서 대상품목별 점검대상을 일괄 추출·선정함

- 일반현황·농지정보 : 직불지급대상인 농업인(농업법인 포함)·농지정보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주기적으로 시스템 검증하여 불일치 건을 점검대상으로 함

* 농업인 정보(성명, 주소), 농업법인(법인명칭, 법인 대표자의 성명), 농지정보(소재지, 면적) 등

□ 이행점검 사전안내

-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농업경영체에 재배품목 등 일치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진행됨을 조사개시 7일전까지 사전 안내함

* 사전 안내(조사목적, 내용, 기간 등) : 서면,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 조사개시 전까지는 농업경영체의 변경등록 신고가 가능함

□ 점검방법

- 재배품목 : 조사대상 농업경영체에 대해 팜맵(항공사진), 사업정보(자조금 관리정보 등), 시스템 검증,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등록된 품목이 식재되었는지, 재배면적이 일치하는 지, 폐경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함

※ 불일치 기준 : 농지 지번별로 등록된 재배품목이 아닌 경우나 등록된 재배면적과 실제 확인된 재배 면적이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다만, 면적차이가 10% 이상이라도 100㎡ 이하인 면적차이는 일치로 간주하고 면적차이가 10%이하라도 노지 660m² 이상 면적차이는 불일치로 판단함)

- 일반현황·농지정보 : 시스템 검증방법으로 상시 점검 체계 적용

□ 불일치 건 등록정보 정정 조치

- 농관원은 조사결과 불일치로 판정한 건은 등록정보를 정정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정보 정정 통지서를 발송함

□ (세부절차) 이행점검 완료 후 조사결과(별지 제44호 서식)를 Agrix시스템에 입력하고, 등록정보 불일치 사항에 대해 등록정보 정정(지원·사무소)^① ⇨ 14일 이내 해당 경영체에게 통지^② ⇨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알릴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공고^③

① 농어업경영체법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 면적, 농지소재지 등)

②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말소 통지서 발송 (별지 제46호 서식)

③ 지원·사무소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내부결재, 공고대장 작성 등) (별지 제47호 서식)

아.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등에 대한 관리

- (부적합 판정) '25년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자 중에서 재배품목·재배면적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등록정보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항이 농관원 이행점검 결과에서 확인되어 농어업경영체법 제6조의2에 따라 등록정보 직권정정을 받은 농업경영체
 - 다만, 등록정보 정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정된 경우 또는 일반현황·농지정보의 시스템 검증과정을 통해 등록정보 정정 완료 된 경우는 적합 판정함
 - 부적합 처리 건은 이행점검표에 증빙자료(부적합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2매 이상 및 조사자 의견서)를 첨부
 - (부적합 통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결과와 기본직불금 감액사항을 부적합 판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업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별지 제42호 서식)함
 - (이의제기 및 확인조사) 부적합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별지 제48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관원(지원·사무소)에 제출함
 - 의견서를 제출받은 관할 농관원(지원·사무소)은 제출된 의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확인 조사 결과를 농업인에게 서면 통보(별지 제49호 서식)함
- * 재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고 부적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하여 결과 통보(이의 제기는 1회에 한함)

자. 부적합 결과 보고

- 농관원(지원·사무소) : 시군구별 준수 의무 미이행자 내역을 AgriX시스템으로 시·군·구에 입력·전송(~10.1)
- 농관원(본원)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에 이행점검 결과 보고(~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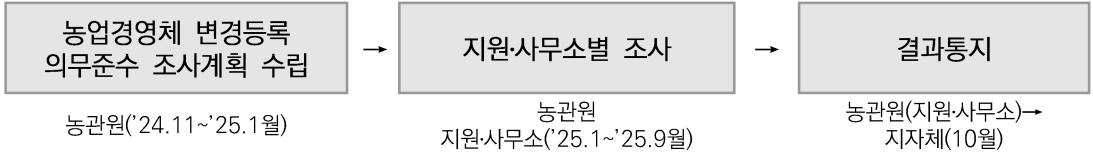
2

공익직불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관리 추진계획

[업무 흐름]	[시기]	[주요 내용]
① 계획 수립 및 알림	'25.1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 계획 수립 ▶세부 추진계획 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유
② 정기 변경신고 기간 운영	'24.11월~ '25.9월	▶농업경영체 주요 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 운영 * 하계작물(4월 ~ 6월), 추계작물(9월), 동계작물(11월 ~ 12월)
③ 변경등록 준수사항 이행점검(재배품목)	'24.10월~ '25.9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준수사항 이행점검 * 하계작물(7월 ~ 9월), 추계작물(10월), 동계작물('26.1월 ~ 2월)
③-1 표본추출	'24.10월~ '25.9월	▶대상품목 일정규모 이상 재배 경영체 추출 * 하계작물(6월), 추계작물(9월), 동계작물(12월)
③-2 재배품목 조사	'24.10월~ '25.9월	▶표본필지 현지조사 등 실시 * 하계작물(7월 ~ 9월), 추계작물(10월), 동계작물('26.1월 ~ 2월)
③-3 조사결과 조치	'24.10월, '25.1~2월, 7월~9월	▶조사결과 불일치 정보 정정 * 하계작물(7월 ~ 9월), 추계작물(10월), 동계작물('26.1월 ~ 2월)
③-4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통지	'24.10월, '25.1~2월, 7월~9월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통보 * 하계작물(7월 ~ 9월), 추계작물(10월), 동계작물('26.1월 ~ 2월)
③-5 의견제출	'24.10월, '25.1~2월, 7월~9월	▶이행점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영체는 이행점검 기관인 농관원에 의견제출(서면) * 하계작물(7월 ~ 9월), 추계작물(10월), 동계작물('26.1월 ~ 2월)
③-6 확인조사	'24.10월, '25.1~2월, 7월~9월	▶의견제출 대한 확인조사 후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불일치 정보 미변경 경영체 부적합 결과 통지
④ 변경등록 준수사항 이행점검(일반현황·농지정보)	'24.10월~ '25.9월	▶주민정보, 토지대장 시스템 검증 적용
⑤ 결과 점검 및 통지	'25.10월	▶이행점검결과 통지(Agrix 활용): 지원·사무소→지자체(10.1.) ▶결과서면보고: 사무소→지원→본원(10.15.)→본부(10.31.)
⑥ 조사결과 평가 및 계획 수립	'25.10월~ 12월	▶'25년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결과 성과 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26년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관련 사업시행 지침 개정의견 제출

3 기관별 세부 추진사항

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 계획 수립



나. 공익직불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이행점검 세부 내용

시기	항목	농관원	지원·사무소	지자체
'24.11~ '25.1월	계획수립	○ '25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추진계획 수립	○ '25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자체 계획 수립(시군)	
1~10월	일반현황 농지정보	○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요청 건 확인 및 관리	○ 변경요청 정보 확인 및 변경처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요청 (지자체 읍면동→농관원)
	정기변경 신고기간	○ 정기 변경신고 기간 운영, 제도홍보	○ 변경신고 홍보 및 변경신청 접수처리	○ 변경신고 제도홍보
	이행점검	○ 품목조사 대상 표본 추출	○ 품목 일치여부 조사	
	정보변경 결과통지	○ 이행점검 불일치 정보에 대한 정정통지 등 관리	○ 경영체에 정보변경 결과 안내 및 정정통지서 발송	
	이의신청 및 확인조사	○ 이의신청 접수 현황 및 확인조사 통지 여부 등 관리	○ 불일치 정보를 변경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영체는 농관원에 의견 제출(서면)	
	조사결과 조치	○ 이행점검 최종 결과 및 지자체 통지 등에 관한 관리	○ 이의신청 건 확인 조사 및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처리 - Agrix 시스템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 통보	○ Agrix 시스템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 받아 감액결정 후 직불금 지급
11~12월	평가 및 차년도 계획수립	○ '25년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결과 성과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 '26년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 추진계획 관련 사업시행지침 개정		

Ⅸ 기타(관련 법상) 준수사항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과 장	044-201-1771
		계 장	044-201-1774
		담당자	044-201-1778
		지자체 및 민원 담당사무관	044-201-1781

* 전국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협조기관

1 개요 및 일반사항

가.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제4호에 따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환경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정한 준수사항에 대한 원활한 정착과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위하여 수립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12조, 제17조~제19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에 대한 준수사항, 시행령 별표3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른 준수사항]

-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조사,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7조 〉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수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8조 〉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등,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 〉

- 해당 농지 등의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

[기타 관련 법령상 의무 준수사항]

- * 다음의 법령을 위반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처분받은 자에 한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 감액
-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에 농약 및 가축분뇨를 버리거나 유출·방치하지 않을 것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하천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라 하천수 이용시 허가 등을 받고, 동 법 제52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 시 허가 등을 받고, 동 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한 퇴비 액비를 사용하고, 동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지 아니하고 액비 살포기준을 지킬 것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동 법 제24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농지등 및 그 주변에 규제병해충,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할 것

다. 이행점검 적용기간

○ 기본직불금 등록자의 이행점검 및 감액여부 결정은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25년도 이행점검 적용기간 : 2024. 10. 1. ~ 2025. 9. 30.(12개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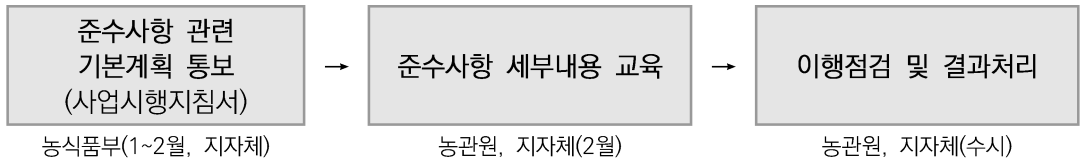
* 기타 관련 법령상 의무 준수사항에 대하여 '24.10.1일 이후에 적발 또는 위반이 확인되어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받은 자는 '25년 기본직접지불금의 10%를 감액

2 추진체계

[업무 흐름]	[시기]	[주요 내용]
① 준수사항에 대한 사업 시행지침 검토 및 시행 (농식품부)	매년 1월	▶ 기본형 공익직불 준수사항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및 계획수립 ▶ 추진계획을 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유
② 이행점검 (지자체 법률 소관부서)	연중	▶ 해당 법률 위반내역 확인 - (지자체/시군구) 위반자 적발·처분 - (지자체/시도) 위반자 적발·처분내역 통보·보고 * 해당법률 담당부서 → 직불담당 부서
③ '법으로 정한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결과처리 (지자체 직불담당 부서)	연중	▶ 지자체는 농업인 등이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등을 위반하여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 - AgriX에 적발일, 통보일, 처분일 등을 명확하게 입력 * e호조를 통해 AgriX에 자동전송하는 경우 생략

3 기관별 세부추진사항

가. 기본형공익직불 준수사항 계획 수립 및 교육



나. 기관별 주요추진 사항

[농식품부, 1월]

- 농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불 준수사항(17가지 항목)에 대한 추진계획을 농관원,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하여 통보한다.

[농관원, 지자체]

- 지자체는 준수사항별 이행점검 결과 기타 관련 법상* 의무준수 위반자를 확인한 뒤(1단계) 위반자에 대한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여 감액 대상자를 확정(2단계)
 - *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법」, 「하천법」 등 공익직불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사항
 - ** 지자체는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감액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14일)를 진행
- 과태료나 처분의 결정이 이미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생략 가능
- 직불담당 부서와 관련법령 담당부서가 다른 경우 ①법령 담당부서에 관련법에 따른 위반자 명단을 요청 → ②직불담당 부서에서 위반자 명단과 직불 신청자를 대조·확인 및 의견청취 진행
 - * (예시) 하천수·지하수 점검 및 관리부서(환경부서) ≠ 공익직불 담당부서(농정부서)
- 준수사항별 담당기관이 제출된 위반자와 AgriX에 신청인 데이터 검증을 통해 감액 대상자 확정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별표3의 제1호파목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농업인에게 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경우
 - 즉시 관할 지자체의 공익직불담당자에게 부과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해당 지자체의 공익직불담당자는 해당 부과대상자의 정보를 AgriX에 등록하여야 한다.

준수사항	관련 법(조항)	과태료·처분근거	비고
① 농약 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안법」 제38조의2,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라 농관원, 지자체(식약청)에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 조사결과 「품질관리법」 제61조,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단계의 경우 농관원 등은 「품질관리법」 제63조에 따라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조치 - 유통·판매단계의 경우 지자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거·폐기하고, 도매시장은 「농안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내 전국 도매시장 출하 제한 - 아울러 지자체는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약 등의 사용자에게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비의도적 오염원인 성분(중금속, 장기 잔류성 농약, 미생물·바이러스 등)으로 인하여 부적합인 경우 기본직불 감액 대상 제외 		
	▶ 「농약관리법」 제23조	▶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농약담당
	▶ 「식품위생법」 제7조	▶ (부적합 농산물 판매 등) 농약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생담당
②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 「식품위생법」 제7조	▶ (부적합 농산물 판매 등)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생담당
③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 「품질관리법」 제63조	▶ (처분명령 위반)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성 담당
	▶ 「농안법」 제38조의2	▶ (도매시장 출하제한 명령 위반) 같은 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도매시장 담당
④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 「친환경농어업법」 제6조	▶ 별도 과태료·처벌 규정 없음 (토양검정 및 준수사항 부적합 기준은 사업시행지침에 기술)	기술센터

준수사항	관련 법(조항)	과태료·처분근거	비고
⑤ 비료의 적정 보관·관리	▶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	▶ (비료를 공공수역 유출) 같은 법 제27조제7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술센터
⑥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농약 무단배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축분뇨 무단배출)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환경담당
⑦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 「하천법」 제50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3항	▶ (허가없이 하천수 이용)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하천수 관리) 같은 법 제98조제3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환경담당
⑧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0조제1항	▶ (부정한 지하수개발, 지하수보전구역 오염)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원상복구명령 미이행, 수질검사 미이행)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하수 담당
⑨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 「가축분뇨법」 제10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제5호	▶ (가축분뇨·퇴비·액비 공공수역 유입, 가축분뇨를 처리시설 유입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환경담당 축산담당
⑩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금지	▶ 「생물다양성법」 제24조제1항, 제24조의4	▶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환경담당
⑪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신고	▶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제1항	▶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미신고)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농약담당

CHAPTER 3

관련 서식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계획(00시·군·구)

시·군·구 및 관계부처간 업무협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 참석기관 및 참석자 :
 - 농관원 :
- 협의 사항 :

주요 협의 내용

- 집중 접수기간(읍·면 별) 일정

시·도	시·군·구	읍·면·동	운영일자	비고

- 기관간 협조체계
- 기타 협의시 논의된 내용

향후 추진일정

-

※ 기타 기재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인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칸은 등록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9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농업인 번호	경영정보변경일	처리기간	90일
------	------	------------	--------	---------	------	-----

1. 일반현황

① 등록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은행명)			
	주소			전화번호		
②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농업인 번호		신청유형	※ 안내문 참조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마을명)	전화번호	축산 · 시설 농가여부	[]축산농가 []시설농가		
③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성명	생년월일	농업인 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배우자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등록신청인 기준) ※ ⑥-1 '기본'란의 '기본직접지불금종류 선택'에서 "소농직접지불금"을 선택한 경우만 해당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가족관계를 작성합니다.

④-1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④-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 구성원 ※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			-
		-			-

■ 소농직접지불금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세대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을 받습니다.

④-1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관계'란에 등록신청인을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부, 모, 자, 녀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 내 모든 세대원을 작성합니다.

④-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를 작성합니다.

■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중 제출한 가족관계 인적정보가 전년도 신청서와 동일한 경우는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 작성 및 해당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위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4쪽)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6쪽)"에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을 거부한 경우는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에서 제외되며,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고의로 미등록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등록제한 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 확인